

제 4 장 기금관리위원회

신설 2011년 9월 5일

개정 2012년 11월 27일

제13조 (설치와 구성) 의과대학 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. [개정 2012년 11월 27일]

1.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.
2. 당연직 위원은 연구 및 기금부학장, 학부모후원회대표, 외래교수협의회장, 발전재단 대표로 하며, 그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.
3. 선출직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,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4. 위원회에는 행정간사 1인을 둔다.

제14조 (기능)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과대학 발전기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결된 사항을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 [개정 2012년 11월 27일]

1. 발전기금 조성 계획의 수립
2. 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관한 사항
3. 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
4. 발전기금의 예산 및 결산
5. 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
6. 기타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